

[검토보고서]

2019. 6. 3.(월) 제306회 정례회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세정과장) 나. 제출일 : 2019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개정(2019.7.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대한 용어를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함(안 제2조)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안 제3조)
- 다. 한글 어문 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나. 입법예고 : 2019. 4. 2. ~ 4. 22. (20일간)

다. 부서협의 결과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보육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요

- 본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서 부과하는 시세의 감면의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개정(법률 제15270호, 2018.12.19. 공포, 2019.7.1. 시행)에 따른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혂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감면기한 조정(안 제2조)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
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
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행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
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정

아

개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 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의 명 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 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 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 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 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 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 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 한다.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일 것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 하인 사람

-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재혼한 배우자를 포함 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 3.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생 략)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삭 제>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대한 용어를 구분함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O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2019년 6월 30일 기준 3년 연장)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 ⑧ 생략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2019.7.1. 시행)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② 생략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u>장애 정도</u>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 ⑤ 생략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 ⑦ ~ ⑧ 생략
 - ※ 제32조제3항 중 "장애 등급"을 <u>"장애 정도"</u>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급"을 <u>"장애 정도"</u>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장애 등급을"을 <u>"장애 정도를"로, "장애 등급 사정"을 "장애 정도 사정"으로</u>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19.7.1. 시행)

-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별표 1]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 0을 2018. 12. 31까지"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⑤ 생략

3)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u>「경기</u>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u>「경기도</u> 문화재 보호 조례」
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8.12.19. 공포, 2019.7.1. 시행)에 따른 장애등급제가 폐지 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자동차세를 감면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고,「지방세특례 제한법」제38조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일몰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